

울산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1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1204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19가단1193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이재규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김영빈

변론종결 2022. 12. 22.

판결선고 2023. 1. 19.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19가단1193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7.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와 D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2. 13. 접수 제6702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중 3.의 나.)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쓸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을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선의 여부도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사해신탁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피고의 선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더욱이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아닌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사해신탁의 취소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피고가 선의인지 여부는 어느 모로 보나 문제되지 아니한다(한편 기록에 나타난 수익자 H조합의 지위, 이 사건 종전 신탁계약의 체결 시점과 그 내용, 대출금의 용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H조합이 이 사건 종전

신탁계약에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자 겸 물상보증인인 C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연, 판사 김용희, 판사 이정목